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-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 - O 제출일자 : 2019년 4월 9일
 - O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다음 달 계좌입금하고자 지급시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당직수당 지급 조항 개정 (제3조)
 -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일·숙직비 미지급
 - 단,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경우 30,000원을 지급 ※ 일직(09:00~18:00)·숙직(18:00~익일09:00) 근무자 당직수당: 50,000원
- 당직수당 지급시기 조항 개정 (제4조)
 - 그달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 ※ (기존) 혀금 당일 지급 → (변경) 계좌입금 다음 달 10일 이내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재택당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 수당을 다음 달 지급하고자 지급시기 조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 내용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일·숙직비를 미지급하고, 다만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경우 30,000원을 지급하며,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